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78482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원고, 피항소인	파산회사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851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6. 파산자 주식회사 A에 한 2006년도 지방소득세 905,859,960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밑에서 1, 2줄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 부분 및 4쪽 13, 14줄의 "피고 [redacted]구청장" 부분을 각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4줄 "(2007. 7. 19. … 같다)" 부분을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5줄 "환급을 신청"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법인세 환급신청'이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7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 같다)" 부분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4쪽 13줄 "통보하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 3,679,636,470원보다 4원 많은 3,679,636,474원(10원 미만을 절삭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처분의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10원 미만을 절삭하는 방식 하에서 3,679,63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10원이 더 많이 경정·고지되게 되었다]』

○ 제1심판결서 5쪽 1~4줄 "한편, 원고는 … 진행되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중 3,679,63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57호로 항소하여 2019.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 취소 및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redacted]세무서장이 대법원 2019두51512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소송 계속 중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쪽 6줄, 9줄, 14~15줄, 7쪽 4줄, 6줄, 8쪽 17줄, 18~19줄의 각 "피고 [redacted]구청장" 부분 및 8쪽 5줄, 9쪽 3줄의 각 "주위적 피고 [redacted]구청장" 부분을 각 "피고"로 고친다.

○ 6쪽 7~8줄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이하 '피고 [redacted]구'라 한다)" 부분을 "제1심 예비적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이하 '[redacted]구'라 한다)"로 고친다.

○ 6쪽 8줄, 밑에서 2줄, 7쪽 10줄, 8쪽 12줄의 각 "피고 [redacted]구" 부분 및 8쪽 7줄의 "예비적 피고 [redacted]구" 부분을 각 "[redacted]구"로 고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은 구 법인세법 제72조에서 정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 결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환급된 것이다. [redacted]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새로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환급된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 위한 징수 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응하는 부당이득 환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을 추징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따른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무효인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자체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 지방세법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후의 법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6사업년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정한 원고의 2006사업연도(2006. 1. 1.~2006. 12. 31.)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06. 12. 31. 당시 유효한 법률인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의 성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부과·징수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을 개별세법인 구 법인세법령에 의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환수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의하여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의 확정, 즉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이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이 새로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아니라 과다하게 환급된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 위한 징수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근거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 절차를 준용한 환수절차로 나아갈 수는 있을지언정[위 대법원 2013다206610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법인세법에 기한 환급세액의 환수처분이 불가능하였다(위 대법원 판결의 선행 사건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144 판결 참조)],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할 조세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에 반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과 같은 개별세법상 환수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법인세 형태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1)]

1) 그러므로 개별세법에 따른 부과징수처분에 의한 환수방법과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에 기한 강제징수절차에 의한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개별세법상 부과징수처분	국세기본법상 강제징수
배당순위	우선권 있음	우선권 있음
행사기간	조세부과제척기간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음
반환범위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추징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2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반환절차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됨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3) 이 사건 처분의 성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도 부과·징수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제172조 제2호),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소득할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법인세할(법인세액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제176조 제2항 및 제178조 제1항).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제178조 제2항).

나) 구 법인세법상 과다환급결정에 따른 세액의 환수결정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따른 소득할의 세액의 추징을 내용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의 문언 및 취지, 이 사건 처분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역시 소득할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환급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신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원고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7. 4. 1.(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을 환급한 다음날이기도 하다)이 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환급신청으로써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일은 2016. 10. 17.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인 2007. 4.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

본d판결서는d판결서d인터넷열람d사이트에서d열람θ출력되었습니다rd본d판결서를d이용하여d사건관계인의
명예나d생활의d평온을d해하는d행위는d관련d법령에d따라d금지됩니다rdd비실명처리일자d:d2022q0l2q26

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끝.